경상북도

도보
www.gb.go.kr

선람	기관(부서)의 장

제6371호 2019년 10월 4일(금)

경 상 북 도

■ 고 시

○ 청송 주왕산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(경상북도 고시 제2019-289호) ····· 5

회람								

발행인:경상북도지사 편집:대변인실

○ 김천시 수도사업 인가 고시
(경상북도 고시 제2019-290호) ····· 26

○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 위탁기관 지정고시
(경상북도 고시 제2019-291호) ····· 30

○ 수목원조성계획 승인(변경) 고시
(경상북도 고시 제2019-292호) ····· 32

■ 공 고

○ 2019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
(경상북도 공고 제2019-1639호) ····· 35

○ 2020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용역 위탁 시행 공고
(경상북도 공고 제2019-1642호) ····· 47

○ 2020년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용역(3차) 위탁 시행 공고
(경상북도 공고 제2019-1643호) ····· 51

○ 도로공사 시행허가(변경) 내용공고
(경상북도 공고 제2019-1644호) ····· 55

시 군

■ 고 시

○ 구미 도시관리계획(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(구미시 고시 제2019-220호) ····· 57

○ 성주 군관리계획(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(성주군 고시 제2019-56호) ····· 60

■ 공 고

○ 안동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(안동시 공고 제2019-1799호) ····· 63

기 타

■ 고 시

○ 하천점용허가 고시
(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-570호) ····· 67

○ 하천점용허가 고시
(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-571호) ····· 68

○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
(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-576호) ····· 69

○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
(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-577호) ····· 70

○ 하천점용허가 고시
(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-580호) ····· 71

◈◈◈

경상북도 고시 제2019 -289호

청송 주왕산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,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과 같은법 제58조에 의한 인·허가 등의 의제사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0월 4일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관광지 조성계획 (변경) 개요

가. 관광지명 : 청송 주왕산 관광지

나. 위 치 :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하의리 725번지 일원

다. 관광지 지정일 : 2007. 10. 22.(경상북도 고시 제2007-470호)

라.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일(최초) : 2007. 10. 22.(경상북도 고시 제2007-470호)

마. 승인면적 : 249,618.7㎡ (변경 없음)

바. 사업기간 : 2007년 ~ 2020년 (변경 없음)

사. 사 업 비

- 당초 : 142,185백만원
- 변경 : 135,790백만원(감 6,395백만원)

아. 사업시행자 : 청송군수

자. 변경사유 :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시설투자계획 변경

- 숙박시설지구 내 펜션 삭제 및 휴양·문화시설지구 내 사계정원 신설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
- 기존 시설지(콘도미니엄2, 허브가든2)의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- 기 조성된 전망휴게소 및 산책로 등의 변경사항 반영

2. 관광지 조성계획 (변경)

가.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구분	면적(㎡)		구성비 (%)	증감	주요 도입시설
	기정	변경			
합 계	249,618.7	249,618.7	100.0	-	
숙박시설지구	55,441.4	39,781.3	15.9	감 15,660.1	콘도미니엄
상가시설지구	13,240.0	13,240.0	5.3	-	테마형 스트리트 몰
휴양문화시설지구	45,989.3	67,748.4	27.2	증 21,759.1	허브가든, 도예촌, 민예촌 및 박물관, 옛편지전시 체험관, 전망휴게소, 사계정원(신설)
공공편익시설지구	44,513.2	44,788.1	17.9	증 274.9	주차장, 진입광장, 도로, 배수지, 오수처리장
기타시설지구	90,434.8	84,060.9	33.7	감 6,373.9	저류지, 녹지 등

나. 관광지 조성계획 총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부지면적		건축면적(㎡)		연면적(㎡)		비고
	면적(㎡)	구성비(%)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합 계	**249,618.7**	**100.0**	**22,717.7**	**18,597.12 (감 4,120.58)**	**53,932.6**	**48,448.57 (감 5,484.03)**	
숙 박 시설지구	39,781.3	15.9	12,533.7	8,103.6 (감 4,430.1)	41,802.2	36,029.2 (감 5,773.0)	
상 가 시설지구	13,240.0	5.3	5,014.0	5,014.0	6,728.0	6,728.0	
휴양문화 시설지구	67,748.4	27.2	4,815.0	5,124.52 (증 309.52)	5,047.4	5,336.37 (증 288.97)	
공공편익 시설지구	44,788.1	17.9	355.0	355.0	355.0	355.0	
기 타 시설지구	84,060.9	33.7	-	-	-	-	

다. 세부시설계획(변경)

(단위 : ㎡)

구분		기정			변경			층수 등	비고 (부지면적 증감)
		부지 면적	건축 면적	연면적	부지 면적	건축 면적	연면적		
합계		**249,618.7**	**22,717.7**	**53,932.6**	**249,618.7**	**18,597.12**	**48,448.57**		–
숙박시설	**소계**	**55,441.4**	**12,533.7**	**41,802.2**	**39,781.3**	**8,103.6**	**36,029.2**		**감 15,660.1**
	콘도 미니엄	39,878.4	8,103.6	36,029.2	39,781.3	8,103.6	36,029.2	1개동, 314실 지하4~지상8층	감 97.1
	펜션	15,563.0	4,430.1	5,773.0	–	–	–		감 15,563.0 (삭제)
상가시설	**소계**	**13,240.0**	**5,014.0**	**6,728.0**	**13,240.0**	**5,014.0**	**6,728.0**		–
	테마형 스트리트몰	13,240.0	5,014.0	6,728.0	13,240.0	5,014.0	6,728.0	1개동, 2층	–
휴양·문화시설	**소계**	**45,989.3**	**4,815.0**	**5,047.4**	**67,748.4**	**5,124.52**	**5,336.37**		**증 21,759.1**
	허브가든	9,754.2	24.1	24.1	9,851.3	24.1	24.1	2개동, 1층	증 97.1
	옛편지전시 체험관	5,797.6	2,300.0	2,300.0	5,797.6	2,300.0	2,300.0		–
	도예촌	8,555.5	717.8	717.8	8,555.5	783.8	783.8	6동	–

구분		기정			변경			층수 등	비고 (부지면적 증감)
		부지 면적	건축 면적	연면적	부지 면적	건축 면적	연면적		
	민예촌 및 박물관	21,705.0	1,733.1	1,925.5	21,705.0	1,733.1	1,925.5	민예촌 22동 박물관 1동	-
	전망휴게소	177.0	40.0	80.0	128.0	40.0	80.0	1개동, 2층	감 49.0 (위치변경)
	사계정원	-	-	-	21,711.0	243.52	222.97	1개동, 1층	증 21,711.0 (신설)
공공·편익시설	**소계**	**44,513.2**	**355.0**	**355.0**	**44,788.1**	**355.0**	**355.0**		**증 274.9**
	주차장	14,795.3	-	-	14,795.3	-	-		-
	진입광장	2,804.7	-	-	2,804.7	-	-		-
	도로	24,254.9	-	-	24,529.8	-	-		증 274.9
	배수지	720.2	-	-	720.2	-	-		-
	오수처리장	1,938.1	355.0	355.0	1,938.1	355.0	355.0	2개동, 1층	-
기타시설	**소계**	**90,434.8**	**-**	**-**	**84,060.9**	**-**	**-**		**감 6,373.9**
	저류지	3,066.2	-	-	3,066.2	-	-		-
	녹지 등	87,368.6	-	-	80,994.7	-	-		감 6,373.9

라. 시설투자계획(변경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총 사업비	1단계(2005~2010)				2단계(2011~2017)				3단계(2018~2020)			
		계	국비	지방비	민자	계	국비	지방비	민자	계	국비	지방비	민자
계	135,790	38,160	16,405	21,755	-	81,408	1,500	2,450	77,458	16,222	3,000	3,000	10,222
부지확보	5,350	5,350	-	5,350	-	-	-	-	-	-	-	-	-
기반시설 공사	23,000	19,050	9,525	9,525	-	3,950	1,500	2,450	-	-	-	-	-
공공부문	16,360	10,360	5,180	5,180	-	-	-	-	-	6,000	3,000	3,000	-
민자유치	87,680	-	-	-	-	77,458	-	-	77,458	10,222	-	-	10,222
조경, 전기,통신	2,600	2,600	1,300	1,300	-	-	-	-	-	-	-	-	-
부대공사	800	800	400	400	-	-	-	-	-	-	-	-	-

마.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: 게재생략

3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: 게재생략

4. 관광지 지정(변경)·조성계획(변경)도 및 지형도면 고시 : 게재생략

-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

5.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고, 경상북도 관광진흥과(☎ 054-880-3190) 및 청송군 문화관광과(☎ 054-870-6239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붙 임 : 청송 주왕산 관광지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1부. 끝.

[붙임]

청송 주왕산 관광지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□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용도지역

■ 용도지역 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249,618.7	-	249,618.7	100.0	
계획관리지역	249,618.7	-	249,618.7	100.0	

2. 지구단위계획구역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
구분	도면표시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기정	1	주왕산 관광지 지구단위계획구역	주왕산면 하의리 725번지 일원	249,618.7	-	249,618.7	07.10.22 (경북고 제07-470호)	관광휴양형

□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토지이용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■ 토지이용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 후		
계	249,618.7	-	249,618.7	100.0	
숙박시설	55,441.4	감 15,660.1	39,781.3	15.9	
상가시설	13,240.0	-	13,240.0	5.3	
휴양 · 문화시설	45,989.3	증 21,759.1	67,748.4	27.2	
공공 · 편익시설	44,513.2	증 274.9	44,788.1	17.9	
녹지 및 기타시설	90,434.8	감 6,373.9	84,060.9	33.7	

■ 토지이용계획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①	숙박시설	•면적 : 55,441.4㎡ → 39,781.3㎡ (감 15,660.1㎡) •위치 : 하의리 859 일원	•기존 숙박시설 중 펜션 삭제 (감 15,563.0㎡) •기존 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2 (부설주차장)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(감 97.1㎡)
②	상가시설	•변경 없음	
③	휴양 · 문화시설	•면적 : 45,989.3㎡ → 67,748.4㎡ (증 21,759.1㎡) •위치 : 하의리 842 일원	•사계정원 신설(증 21,711.0㎡) •기존 휴양 · 문화시설 중 허브가든2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(증 97.1㎡) •도예촌 내 건축물 증축사항 반영 (건축면적 및 연면적 : 기정 717.8㎡ → 변경 783.8㎡, 증 66㎡)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④	공공 · 편익시설	•면적 : 44,513.2㎡ → 44,788.1㎡ (증 274.9㎡) •위치 : 하의리 840 일원	•산책로 변경에 따른 도로(가각 및 기타) 변경사항 반영(증 274.9㎡)
⑤	녹지 및 기타시설	•면적 : 90,434.8㎡ → 84,060.9㎡ (감 6,373.9㎡) •위치 : 하의리 844 일원	•휴양 · 문화시설 중 사계정원 신설에 따른 녹지면적 축소(감 6,148.0㎡) •기 조성된 전망휴게소 및 산책로 변경사항 반영(감 225.9㎡)

2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) 교통시설

가) 도로 (변경)

■ 총괄표 (변경)

구분		합계			1류			2류			3류		
	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
합계	기정	8	1,697	24,254.9	2	185	2,872.0	1	72	1,301.0	5	1,440	16,697.5
	변경	8	1,697	24,529.8	2	185	2,872.0	1	72	1,301.0	5	1,440	16,697.5
중로	기정	4	1,174	17,421.5	1	75	1,626.0	1	72	1,301.0	2	1,027	14,494.5
소로	기정	4	523	3,449.0	1	110	1,246.0	–	–	–	3	413	2,203.0
가각 및 기타	기정	–	–	3,384.4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
	변경	–	–	3,659.3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	–

주) 변경 변경사항 : 산책로 변경에 따른 가각 및 기타 면적 변경

■ 도로 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1	1	21	국지도로	75	지방도 914 (838공)	중로3-1 (851도)	일반도로		07.10.22 (경고07-470)	
기정	중로	2	1	18	국지도로	72	지방도 914 (851도)	중로3-2 (842원)	일반도로		07.10.22 (경고07-470)	
기정	중로	3	1	14	국지도로	603	중로2-1 (842원)	859대	일반도로		07.10.22 (경고07-470)	
기정	중로	3	2	14	국지도로	424	중로 2-1 (842원)	771전	일반도로		07.10.22 (경고07-470)	
기정	소로	1	1	10	국지도로	110	중로3-1 (855도)	825-4대	일반도로		15.10.14 (청송고15-75)	
기정	소로	3	1	6	국지도로	132 (84)	지방도 914 (780-20천)	852도	일반도로		07.10.22 (경고07-470)	
기정	소로	3	2	4	국지도로	144	중로3-2 (853도)	843수	일반도로		07.10.22 (경고07-470)	
기정	소로	3	3	5	국지도로	185	소로1-2 (848구)	825-15대	일반도로		15.10.14 (청송고15-75)	

주) ( )는 관광지 내 도로연장임

나) 주차장 (변경없음)

■ 주차장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계	3개소			14,795.3	-	14,795.3		
기정	1	주차장	834주 일원	2,684.3	-	2,684.3	07.10.22 (경고07-470)	
기정	2	주차장	836주 일원	4,655.5	-	4,655.5	07.10.22 (경고07-470)	
기정	3	주차장	840주 일원	7,455.5	-	7,455.5	07.10.22 (경고07-470)	

2) 공간시설

가) 광장 (변경 없음)

■ 광장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계	1개소				2,804.7	-	2,804.7		
기정	1	광장	경관광장	837잡 일원	2,804.7	-	2,804.7	07.10.22 (경고07-470)	

나) 완충녹지 (변경 없음)

■ 완충녹지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계	9개소				11,940.2	-	11,940.2		
기정	1	녹지	완충녹지	832유 일원	306.6	-	306.6	07.10.22 (경고07-470)	
기정	2	녹지	완충녹지	835공 일원	3,228.6	-	3,228.6	07.10.22 (경고07-470)	
기정	3	녹지	완충녹지	841공 일원	480.6	-	480.6	07.10.22 (경고07-470)	
기정	4	녹지	완충녹지	848구 일원	835.0	-	835.0	15.10.14 (청송고15-75)	
기정	5	녹지	완충녹지	825-12대 일원	369.0	-	369.0	15.10.14 (청송고15-75)	
기정	6	녹지	완충녹지	769-1답 일원	44.0	-	44.0	15.10.14 (청송고15-75)	
기정	7	녹지	완충녹지	865공 일원	3,690.6	-	3,690.6	15.10.14 (청송고15-75)	
기정	8	녹지	완충녹지	860공 일원	659.4	-	659.4	15.10.14 (청송고15-75)	
기정	9	녹지	완충녹지	838공 일원	2,326.4	-	2,326.4	15.10.14 (청송고15-75)	

다) 경관녹지 (변경)

■ 경관녹지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계	7개소				75,428.4	감 6,373.9	69,054.5		
기정	1	녹지	경관녹지	864임 일원	3,037.9	-	3,037.9	07.10.22 (경고07-470)	
변경	2	녹지	경관녹지	844임 일원	23,290.0	증 2,040.9	25,330.9	07.10.22 (경고07-470)	
변경	3	녹지	경관녹지	844임 일원	33,813.5	감 21,180.4	12,633.1	15.10.14 (청송고15-75)	
변경	4	녹지	경관녹지	844임 일원	771.0	증 5,418.9	6,189.9	15.10.14 (청송고15-75)	
폐지	5	녹지	경관녹지	844임 일원	3,820.0	감 3,820.0	-	15.10.14 (청송고15-75)	
폐지	6	녹지	경관녹지	844임 일원	4,604.0	감 4,604.0	-	15.10.14 (청송고15-75)	
변경	7→5	녹지	경관녹지	844임 일원	6,092.0	감 829.7	5,262.3	15.10.14 (청송고15-75)	
신설	6	녹지	경관녹지	844임 일원	-	증 16,600.4	16,600.4		

3) 유통 및 공급시설

가) 수도공급설비 (변경 없음)

■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계	1개소			720.2	-	720.2		
기정	1	수도공급설비 (배수지)	843수 일원	720.2	-	720.2	07.10.22 (경고07-470)	

4) 방재시설

가) 유수지 (변경 없음)

■ 유수지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계	1개소				3,066.2	-	3,066.2		
기정	1	유수지	저류시설	839유 일원	3,066.2	-	3,066.2	07.10.22 (경고07-470)	

5) 환경기초시설

가) 수질오염방지시설 (변경 없음)

■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계	1개소				1,938.1	-	1,938.1		
기정	1	수질오염 방지시설	오수 처리장	834주 일원	1,938.1	-	1,938.1	07.10.22 (경고07-470)	

3.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
도면표시번호	가구번호	가구면적(㎡)			획지면적(㎡)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위치	기정	변경	
합계	-	131,404.1	증 6,099.0	137,503.1	-	131,404.1	137,503.1	
A	A1	39,878.4	감 97.1	39,781.3	① 859 대	37,192.8	37,192.8	콘도미니엄 1
					② 861 과	2,685.6	2,588.5	콘도미니엄 2
	A2	9,034.0	감 9,034.0	-	① 723-1 전	9,034.0	-	펜션1 (삭제)
	A3	6,529.0	감 6,529.0	-	① 771 전	6,529.0	-	펜션2 (삭제)
B	B1	13,240.0	-	13,240.0	① 731 전	13,240.0	13,240.0	테마형 스트리트몰
C	C1	36,058.1	-	36,058.1	① 842 원	21,705.0	21,705.0	민예촌 및 박물관
					② 842 원	8,555.5	8,555.5	도예촌
					③ 842 원	5,797.6	5,797.6	옛편지 전시 체험관
	C2	9,754.2	증 97.1	9,851.3	① 862 원	2,790.9	2,888.0	허브가든 2
					② 857 과	6,963.3	6,963.3	허브가든 1

도면표시번호	가구번호	가구면적(㎡)			획지면적(㎡)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위치	기정	변경	
	C3	177.0	감 49	128.0	① 844 임	177.0	128.0	전망대
	C4	-	증 9,409.0	9,409.0	① 723-1 전	-	9,409.0	사계정원1(신설)
	C5	-	증 12,302.0	12,302.0	① 771 전	-	12,302.0	사계정원2(신설)
D	D1	2,684.3	-	2,684.3	① 834 차	2,684.3	2,684.3	주차장1
	D2	4,655.5	-	4,655.5	① 836 차	4,655.5	4,655.5	주차장2
	D3	7,455.5	-	7,455.5	① 840 차	7,455.5	7,455.5	주차장3
	D4	1,938.1	-	1,938.1	① 833 잡	1,938.1	1,938.1	오수처리장

4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(변경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분	계획내용	비고
기정	A1-1	용도	•권장용도 A / 불허용도 A (별표참조)	조성완료시설
		건폐율	•60% 이하	
		용적률	•150% 이하	
		높이	•8층 이하	
기정	A1-2	용도	•권장용도 A / 불허용도 A (별표참조)	
		건폐율	•60% 이하	
		용적률	•150% 이하	
		높이	•2층 이하	
삭제	A2 ~ A3	용도	•권장용도 A / 불허용도 B (별표참조)	
		건폐율	•60% 이하	
		용적률	•150% 이하	
		높이	•2층 이하	
기정	B1	용도	•권장용도 B / 불허용도 B (별표참조)	
		건폐율	•60% 이하	
		용적률	•150% 이하	
		높이	•2층 이하	
기정	C1 ~ C2	용도	•권장용도 C / 불허용도 B (별표참조)	C1, C2 일부 운영중
		건폐율	•40% 이하	
		용적률	•100% 이하	
		높이	•2층 이하	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분	계획내용	비고
기정	C3	용도	•권장용도 C / 불허용도 B (별표참조)	
		건폐율	•40% 이하	
		용적률	•100% 이하	
		높이	•2층 이하	
신설	C4~C5	용도	•권장용도 C / 불허용도 B (별표참조)	
		건폐율	•40% 이하	
		용적률	•100% 이하	
		높이	•2층 이하	
기정	D1 ~ D3	용도	•권장용도 D / · 불허용도 B (별표참조)	조성완료시설
		건폐율	•40% 이하	
		용적률	•100% 이하	
		높이	•1층 이하	
기정	D4	용도	•권장용도 D / 불허용도 B (별표참조)	
		건폐율	•40% 이하	
		용적률	•100% 이하	
		높이	•2층 이하	

[별표. 건축물의 용도]

■ 권장용도

구 분	권 장 용 도
A	•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및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•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19에 의한 숙박시설지구에 해당하는 시설
B	•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•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•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•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19에 의한 상가시설지구에 해당하는 시설
C	•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•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, 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용도 •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•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•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, 휴게소 •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19에 의한 휴양·문화시설지구에 해당하는 시설
D	•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, 대피소,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•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19에 의한 공공편익시설지구에 해당하는 시설

■ 불허용도

구분	불 허 용 도	
	기정	변경
A	•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, 안마원 •단독주택 · 공동주택 •운수시설 · 의료시설 •교육연구시설 (교육원 제외) · 노유자시설 •위락시설 · 공장 •창고시설 ·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•자동차 관련시설 · 자원순환 관련시설 (오수처리장 제외) •교정 및 군사시설 · 방송통신시설 •발전시설 · 묘지관련시설	•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, 안마원 •단독주택 · 공동주택 •운수시설 · 의료시설 •교육연구시설 (교육원 제외) · 노유자시설 •위락시설 · 공장 •창고시설 ·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•자동차 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· 자원순환 관련시설(오수처리장 제외) •교정 및 군사시설 · 방송통신시설 •발전시설 · 묘지관련시설
B	•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•불허용도 A	•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•불허용도 A

경상북도 고시 제2019 -290호

김천시 수도사업 인가 고시

김천시 봉산면 일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인가신청에 대하여「수도법」제17조(일반수도사업의 인가)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10. 4.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사업의 명칭 : 김천 봉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

2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
가. 사업시행자 : 김천시장

나. 주 소 :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(신음동)

3. 사업의 목적 및 사업개요

가. 사업의 목적

본 사업은 식수원오염 및 수량부족으로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봉산면 일원의 미급수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지 및 관로시설 등을 신설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

나. 총사업비 : 14,330백만원(국 4,050, 도 7,271, 시 3,009)

다. 사업개요

구 분		내 용
사 업 명		김천시 봉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
사업의 위치		김천시 봉산면 일원
사업 내용	송수관로	D100~150, L=8.251km
	배수관로	D75~150, L=20.057km
	급수관로	D13~50, L=15.311km
	배 수 지	봉산1,2배수지 V=200㎥
	가 압 장	8개소(송수가압장2, 배·급수가압장6)

4. 사업시행지의 위치

가. 위 치 : 김천시 봉산면 일원

- 봉산 제1배수지 :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산 111-2
- 봉산 제2배수지 :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산 118

5. 급수구역·급수인구 및 급수량

가. 급수구역 : 김천시 봉산면 일원

나. 급수량 : 375㎥/일

다. 계획급수인구 : 1,523명

6.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

가. 사업시행 기간 : 2019 ~ 2021

나. 급수시작예정일 : 2021

7. 수용·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·지목·면적 및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

■ 배수지 편입용지 조서

순번	배수지명	소재지	지 번	지목	면 적	영구점용	소 유 자		비고
							성 명	주 소	
1	봉산 2배수지	광천리	산118	임	12,051	1,702.89	김천시		
2		광천리	산117-7	임	271	107.51	김천시		
3	봉산 1배수지	신암리	1070	도	397	2.56	국(건설부)		
4		신암리	199-4	대	40	32.61	김천시		
5		신암리	산197	구	8,531	10.69	국(건설부)		
6		신암리	산111-2	임	10,601	2,471.30	김천시		
소 계						4,327.55			

8.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기타 관계서류는 김천시 상하수도과(054-420-6631)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경상북도 고시 제2019 -291호

도로관리 시스템 구축 위탁기관 지정고시

「도로법」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, 「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」 제8조 규정에 따라 『도로관리 시스템 구축』 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0월 4일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위탁기관 지정목적

○ 체계적인 도로유지·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제11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(업무의 위탁),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8조(협약체결) 규정에 따라 『도로관리 시스템 구축』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

2. 위탁기관

○ 기관명 : 한국건설관리공사 (대표자 : 정덕수)

○ 주 소 :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

3. 위탁내용

○ 체계적인 도로유지·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

- 도로유지·관리시스템 구축(포장관리, 비탈면관리, 교량관리 등)
- 빅데이터 기반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(도로 유지보수 등)
-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예산절감 및 교량수명 연장 등

4. 위탁기간

○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 일부터 지정의 해지 및 변경 고시 일까지

경상북도 고시 제2019-292호

수목원조성계획 승인(변경) 고시

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7항,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 산토리니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0월 4일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명 칭 : 산토리니수목원

2. 위 치 :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산 178-5번지 외 2필지

3. 면 적 : 25,907㎡

4. 조성계획 승인일자 : 2019. 09. 25.

5. 수목원 조성대상지 현황

(단위 : ㎡)

연번	소 재 지				지목	소유구분	지적(㎡)	지정면적(㎡)	소유자	비고
	시군	읍면	리	지번						
	합계			3필			46,566	25,907		
1	청도	화양	고평	산2-1	임	사	23,524	23,524	정한태	
2	청도	화양	삼신	산178-5	임	사	19,269	2,197	정한태	
3	청도	화양	삼신	산176	임	사	3,773	186	정한태	

◈◈◈

경상북도 공고 제2019 -1639호

2019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

도내 중소기업근로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4일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장학생 선발개요

- 근 거 :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
- 지급금액
  - 고등학생 : 연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
  - 대 학 생 : 연 3백만원
- 지급시기 : 연 1회 지급

2. 장학생 추천권자

- 시장 · 군수, 근로자 · 경영자단체, 중소기업관련 기관 · 단체

3. 장학생 추천

가. 추천기준(공통사항)

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의 소재지 및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는 근로자(공고일 현재 동일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자)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아래 성적기준 이상인 각 호에 해당하는 자

가)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가계지출기준 이하인 자

나) 산업재해 및 기타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

※ 성적기준

구 분		성적기준
재학생	고등학생	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“5등급” 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/100이상인 사람
	대 학 생	재적학과 평균등급(평점)이 C 이상인 사람
신입생	고등학생	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사람
	대 학 생	직전학기 성적으로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특별전형 등 특수한 경우는 위 성적 기준을 준용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

※ 2019년 월평균 가구 중위소득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)

(단위 : 원)

가구원수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소득금액	1,707,008	2,906,528	3,760,032	4,613,536	5,467,040	6,320,544	7,174,048

*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1인 증가시마다 853,504원씩 증가(8인가구: 8,027,552원)

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업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았거나 그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근로자의 자녀(단, 기업대표 수상자는 소속직원에게 장학금을 추천할 수 있다)

⇒ 위 ①, ②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천가능

나. 추천제외자

- 학교, 기업체, 기타 기관 및 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자

  (단, 타 장학금 수혜대상자 고등학생은 연간 50만원, 대학생은 연간 200만원 미만인 자 추천가능)
-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라도 자녀가 타 시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(대학생은 제외), 추천일 현재 휴학중인 대학생
-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(학생)

다. 추천 시 유의사항

- 근로자는 생산현장의 장기 근속자를 우선하여 추천하되, 기업체별 고르게 선발할 예정이므로 한 기업체에 편중되게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
- 사실확인 등을 통해 추천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(추천권자)

  ※ 기업체 및 타기관등 학자금 지원여부 반드시 확인
- 사실조사 확인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재시에는 구체적으로 작성(부서장 확인)
- 대학생의 경우 추천일 현재 휴학여부를 반드시 확인
- 1세대 1자녀 추천

-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1호에 규정한 자를 말함
-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
 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천시 유의

라. 추천서류

- 추천권자

① 장학생 추천자 명단 1부 [서식 1]

②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[서식 2]

③ 사실조사 확인서 1부 [서식 3] ※ 확인내용 여부 반드시 기재

④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(추천기관장) 1부 [서식 4]

- 신청인(근로자 및 근로자의 자녀)

⑤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[서식 5]

※ 1. 예금주는 부모명의로 기재

2. 근로자 재산상황 유의사항

- 월평균 소득액 :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분리 작성(주민등록등본 기준)

소득있는 가구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히 제출

- 재산가액 : 토지와 건물 각 기준 준수하여 구분 기재

⑥ 학교장 또는 총장 추천서 1부(성적증명서 첨부) [서식 6]

⑦ 재학증명서(학생) 1부

⑧ 재직증명서(근로자) 1부 **※ 기업체 소재지(근로자 근무지 주소) 기재**

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(가구주 및 가구원)

⑩ 국 · 지방세 사실증명서 1부(가구주 및 가구원)

⑪ 가족관계 증명서 1부

⑫ 주민등록등본 1부

⑬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 (기업체) 1부 [서식 7]

마. 선발기준

- 추천인원 중 지역별 업체수, 근로자수,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

4. 신청기간 및 접수처

가. 장학생 접수기한 : 2019. 11. 15.(금)까지

나. 접 수 처

- 시·군 노정업무 담당부서(경제노동과, 노동복지과, 지역경제과 등)
- 근로자단체

5. 기타사항

가. 신청서식은 도내 23개 시군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(http://www.gb.go.kr)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활용

나. 문 의 처

- 경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(054-880-2687)
- 시·군 노정업무 담당부서

[서식 1]

장학생 추천자 명단

추천 순위	근로자				학생			
	업체명	성 명	연령	근무기간	학교명	학 과	학년	성 적

※ 성적기재 기준

○ 고등학생

- 신입생 :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
- 재학생 :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람

○ 대 학 생

- 신입생 : 직전학기 성적으로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특별전형 등 특수한 경우는 위 성적 기준을 준용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.
- 재학생 : 재적학과 평균등급(평점)이 C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

2019년 월 일

기관장명 : ○ ○ ○ (직인)

경상북도지사 귀하

[서식 2]

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

ㅇ 학생

성 명	학 교 명	학과	학년	생년월일	근로자와의 관 계
(한글)					
(한자)					

ㅇ 근로자

성 명	생년월일	주 소	소속기업 현황			
			업체명	업 종	직 책	소재지
(한글)						
(한자)						

위 학생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.

붙임 1. 가정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 1부.
2. 기업생산성 향상 및 산업평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증명하는 서류 1부.

2019년 월 일

기관장명 : ○ ○ ○ (직인)

경상북도지사 귀하

[서식 3]

사 실 조 사 확 인 서

1. 인적사항

근 로 자		학 생	
소 속 회 사		소 속 학 교	
직 위		학 년	
성 명		성 명	

2. 확인내용

○ 근로자 소속회사의 중소기업 여부 :
○ 근로자의 회사근무 여부 :
○ 추천기준 적합여부 :
○ 장학금 지급신청서 내용 사실여부 :
○ 당해학교, 기업체, 타 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수혜여부 :
○ 수업료 면제 수혜여부 :
○ 휴학여부(대학생의 경우) :

2019년 월 일

(확 인 자)

소 속 :
직 위 : 성 명 : ㊞

경상북도지사 귀하

[서식 4]

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

[추천기관장 확인용]

1. 인적사항

근 로 자		학 생	
소 속 회 사		학교 및 학과	
직 위		학 년	
생 년 월 일		생 년 월 일	
성 명		성 명	

2. 확인 내역

장학금 수혜여부	
장학금 수혜 내역	장학금 명 : 장학금액 : 원

상기 학생에 대하여 본 시(군) 지급 장학금 수혜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19년 월 일

기관장명 : ○ ○ ○ (직인)

경상북도지사 귀하

[서식 5]

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

* 학 생 인 적 사 항							사 진 (3×4㎝)
성 명	(한글) (한자)			성 별	남 · 여		
생년월일	년 월 일(만 세)						
자택주소				전 화 번 호	( ) -		
소 속 학 교	소재지						
	고등학교 · 대학(교) 학과 학년						
* 근 로 자 재 직 사 항							
학생과의 관 계	성 명	생년월일	업 체 명	재직기간	타장학금 수혜여부	재직확인	
거 래 금융기관	금융기관명		계좌번호		예금주		
* 근 로 자 재 산 상 황							
주 거 상 황	자택( ) 전세( ) 기타( )	월평균 소득액(천원)			재 산 가 액(천원)		
		계	가구주	가구원	계	토 지	건 물
표창여부							
※ 가구주(원)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(근무처에서 발행) (재산가액 : 토지는 개별공시지가, 건물은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 기준)							
* 가 족 사 항							
관 계	성 명	생년월일	학력	직장(직업) 직위			

※ 1. 예금주는 부모명의로 기재

2. 근로자 재산상황 유의사항 : ①월평균 소득액 :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분리 작성(주민등록등본 기준), 소득있는 가구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히 제출 ②재산가액 : 토지와 건물 각 기준 준수하여 구분 기재

「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.

붙임 1. 학교장 추천서 1부
2. 중소기업근로자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) 1부

신청인 (학 생) (인)
보호자 (근로자) (인)

경상북도지사 귀하

[서식 6]

학 교 장 추 천 서

○ 성 명 : (한글) (한자)
○ 생년월일 : -
○ 주 소 :
○ 학 교 명 : 학교 학과 학년
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으로 다음과 같이 귀 도의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.
○ 직전학기 성적

고등학생		신입생 (석차/학년전체)	대 학 생	
학년/학기	5등급이상과목수 / 전체과목수		학년/학기	평균등급 (평점)
/	/ (%)	/	/	
〈구비서류〉 성적증명서 사본 1부				

※ 고등학생 : “5등급” 이상 과목수의 전체과목수에 대한 비율 기재
대 학 생 : 등급 A^{+}, A^{0}, A^{-}, B^{+}, B^{0}등의 평균등급 기재
신 입 생 : 입학성적(학년석차)을 기재
(※ 단, 대학 신입생은 직전학기 성적의 “5등급” 이상 과목수의 비율 기재)

○ 타 장학금 수혜여부(해당년도)
· 장학금명 : · 지급기관(단체)명 :
· 수혜금액 :

○ 품행 등에 대한 의견
·

2019년 월 일

○ ○ 교 장(총 장) (직인)

경상북도지사 귀하

[서식 7]

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

[기업체 대표 확인용]

1. 인적사항

근 로 자		학 생	
소 속 회 사		학교 및 학과	
직 위		학 년	
생 년 월 일		생 년 월 일	
성 명		성 명	

2. 확인 내역

장학금 수혜여부	
장학금 수혜 내역	장학금 명 : 장학금액 : 원

상기 학생에 대하여 본사 지급 장학금 수혜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19년 월 일

○ ○ 대표이사(사장) (인)

경상북도지사 귀하

경상북도 공고 제2019 -1642호

2020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용역 위탁 시행 공고

2020년도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 업무를「사방사업법」제22조의 2 제5항에 따라 사방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함에 따라 업무내용 등을 「사방사업법」시행령 제21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4일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제 목 : 2020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용역 시행 공고

2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
3. 업무내용 : 사방사업의 필요성, 적합성, 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

4. 사 업 량 : 산림유역관리사업 1개소

5. 위　　치 : 울릉군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(☏054-778-389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용 1부.

〈붙임〉

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용

사업의 종류		평가내용
공통사항		○ 사방사업 대상지가 산지 또는 산지와 연접된 토지인지 여부 ○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○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훼손·경관저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○ 사방사업 시행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○ 당해 지역의 피해발생(산사태·토석류) 이력 ○ 다른 용도로의 개발계획 등 법적제한 사항 ○ 관측자료 수집 및 분석 ○ 임황 및 지형·지질 특성 ○ 멸종위기 동·식물 서식지 여부 및 주변 식생의 특성 ○ 현장의 장비·자재 활용 및 운반 여건 ○ 주요 공작물배치 등 평가대상지를 구획한 수치지형도 (1/5,000) ○ 기본공작물의 형식과 경제성 등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○ 개략공사비 추정
야계사방 사업	계류보전 사업	○ 상류지역의 산사태 발생 및 토석류 유출의 위험정도 분석 ○ 계류양쪽 사면의 침식위험정도 분석 ○ 유역면적, 계류의 경사도, 계류 폭, 산림과의 접속된 정도,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 ○ 수서동물 서식 유무 ○ 계류보전사업에 따른 계곡의 변형, 생태파괴,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작업방법 제시 ○ 생태통로의 설치 필요성
	사방댐 설치사업	○ 상류지역의 산사태 발생 위험 판정 및 상류유역의 토석류 발생량 분석 ○ 산사태(토석류) 유출의 위험정도 시뮬레이션 수치 분석

사업의 종류		평가내용
		○ 사방댐 설치에 따른 계곡의 변형, 생태파괴,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작업방법 제시 ○ 사방댐의 형식(투과형, 일부투과형, 불투과형) 제시 및 선택 사유 ○ 유역면적, 저사효과, 계류 폭, 계류의 종단경사도, 노출암반 정도,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 ○ 생태통로(어도)의 설치 필요성 ○ 사방댐 상·하류의 계통적 사방사업을 위한 주요공작물 검토

경상북도 공고 제2019 - 1643호

2020년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용역(3차) 위탁 시행 공고

2020년도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 업무를「사방사업법」제22조의 2 제5항에 따라 사방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함에 따라 업무내용 등을 「사방사업법」시행령 제21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4일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제 목 : 2020년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용역(3차)시행 공고

2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
3. 업무내용 : 사방사업의 필요성, 적합성, 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

4. 사 업 량 : 산지사방사업 1ha, 사방댐 1개소, 계류보전 2km

5. 위 치 : 포항시. 경주시, 영덕군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(☏054-778-3891)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용 1부.

〈붙임〉

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용

사업의 종류		평가내용
공통사항		○ 사방사업 대상지가 산지 또는 산지와 연접된 토지인지 여부 ○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○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훼손·경관저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○ 사방사업 시행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○ 당해 지역의 피해발생(산사태·토석류) 이력 ○ 다른 용도로의 개발계획 등 법적제한 사항 ○ 관측자료 수집 및 분석 ○ 임황 및 지형·지질 특성 ○ 멸종위기 동·식물 서식지 여부 및 주변 식생의 특성 ○ 현장의 장비·자재 활용 및 운반 여건 ○ 주요 공작물배치 등 평가대상지를 구획한 수치지형도 (1/5,000) ○ 기본공작물의 형식과 경제성 등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○ 개략공사비 추정
야계사방사업	계류보전사업	○ 상류지역의 산사태 발생 및 토석류 유출의 위험정도 분석 ○ 계류양쪽 사면의 침식위험정도 분석 ○ 유역면적, 계류의 경사도, 계류 폭, 산림과의 접속된 정도,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 ○ 수서동물 서식 유무 ○ 계류보전사업에 따른 계곡의 변형, 생태파괴,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작업방법 제시 ○ 생태통로의 설치 필요성
	사방댐 설치사업	○ 상류지역의 산사태 발생 위험 판정 및 상류유역의 토석류 발생량 분석 ○ 산사태(토석류) 유출의 위험정도 시뮬레이션 수치 분석 ○ 사방댐 설치에 따른 계곡의 변형, 생태파괴, 경관훼손 등을 최

사업의 종류		평가내용
		소화 할 수 있는 작업방법 제시 ○ 사방댐의 형식(투과형, 일부투과형, 불투과형) 제시 및 선택 사유 ○ 유역면적, 저사효과, 계류 폭, 계류의 종단경사도, 노출암반 정도,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 ○ 생태통로(어도)의 설치 필요성 ○ 사방댐 상·하류의 계통적 사방사업을 위한 주요공작물 검토

경상북도 공고 제2019-1644호

도로공사 시행허가(변경) 내용공고

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4조 제2항의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변경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4일

경 상 북 도 지 사

도로의 종류	지방도	**노 선 명**	지방도927호선 구미-단양
공사의 종류	지방도927호선 용대리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		
구 간	군위군 군위읍 용대리 370-2 ~ 294-2번지 일원		
공사시행장소	상 동		
착수일	2015년 5월	**준공예정일**	당초 2016년 5월 31일 변경 2019년 12월 31일

이 유 : 지방도927호선 용대리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구간 중 신설도로와 기존도로 합류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의견 반영

◈◈◈

구미시 고시 제2019 - 220호

구미 도시관리계획(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구미시 고아읍, 산동면, 해평면 일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(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10. 04.

구 미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취지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.

○ 또한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·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.

2.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

가. 수도공급설비 결정(변경)(안)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 설 명	위 치			연장 (km)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			
기정	28	수도공급 설비 (송수관로)	고아읍 괴평리 409-3	해평면 괴곡리 산5, 산동면 신당리 1167-8	-	17.003	46,240.4	구미시고시 제2016-262호 (2016.11.07.)	
변경	28	수도공급 설비 (송수관로)	고아읍 괴평리 409-3	해평면 괴곡리 산5, 산동면 신당리 1167-8	-	17.003	45,406.8	구미시고시 제2016-262호 (2016.11.07.)	

나. 수도공급설비 결정(변경)(안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28	수도공급설비 (송수관로)	· 면적 변경 - 기정 : 46,240.4㎡ - 변경 : 45,406.8㎡ (감 833.6㎡)	· 구미확장단지 및 구미하이테크밸리 용수공급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및 공사계획 변경 등에 따른 관로 노선 변경사항 반영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면 및 지형도면 : 도면게재 생략

4. 기타 서류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과(054-480-5402)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. 끝.

성주군 고시 제2019-56호

성주 군관리계획(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0번지 일원 군관리계획(학교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「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19년 10월 4일

성 주 군 수

1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.

○ 또한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·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.

2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가. 공공 · 문화체육시설

○ 학교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5	성주여중고등학교	중고등학교	성주읍 경산리 520번지 일원	25,917	증)224	26,141	경고 제98-55호 (1998.3.30)	

○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5	성주여중고등학교	- 당초 면적 : 25,917㎡ - 변경 면적 : 26,141㎡ - 증감 면적 : 증) 224㎡	· 학교시설 주차장 확장에 따른 면적 증가

3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면 및 지형도면 등 : 붙임과 같음(도면게재 생략)

※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.

4. 이해관계인은 성주군청 도시건축과(054-930-6563)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◈◈◈

안동시 공고 제2019 - 1799호

안동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751-11번지 일원 안동 도시계획시설(주차장: 농협사료 경북지사 주차장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,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99조에 따라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서류 공람을 실시하오니,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10월 4일

안 동 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○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751-11번지 외 2필지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○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사업

○ 명 칭 : 농협사료 경북지사 주차장 설치공사

3. 사업의 면적 및 규모

○ 시설결정면적 : 7,561㎡

○ 금회 사업시행면적 : 7,561㎡

1) 공사현황

가. 토 공 : 흙쌓기 6,801㎥, 터파기 12㎥, 씨드및거적덮기 1,177㎡

나. 구조물공 : L형측구 L=352m, 집수정(600×600×1,000mm) 12EA,
PE이중벽관(D300mm) L=269m

다. 포장공 : 아스콘포장 A=5,940㎡

마. 부대공 : 1식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○ 성 명 : ㈜농협사료 경북지사

○ 주 소 :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샘들윗길 40

5. 사업의 시행기간

○ 착수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

○ 준공예정일 : 2021년 12월 31일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, 권리자의 주소, 성명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 유 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	비고
						주 소	성명		
계				7,561	7,561				
1	남선면 이천리	751-11	임	4,229	4,229	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528	주식회사 농협사료	-	
2	남선면 이천리	751-14	답	3,038	3,038	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528	주식회사 농협사료	-	
3	남선면 이천리	751-24	답	294	294	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528	주식회사 농협사료	-	

7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8. 공람장소 :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(☎054-840-5402)

9. 의견제출

본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고사항에 대한 찬·반 여부와 그 사유

나. 주소, 성명, 전화번호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
◈◈◈

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-570호

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

2019. 10. 4.

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

하천의 명칭	낙동강(국가하천)
점용자 성명 및 주소	성명 : 안동시장(토지정보과) 주소 : 경상북도 안동시 토계로 115(명륜동)
점용위치 및 면적	위치 :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300번지 외 3필지 일원 면적 : 1.6㎡
점용목적 및 시설개요	점용목적 : 국가지점번호 안내판 설치 시설개요 : 안내판(알루미늄, 1.0m×1.0m×0.04m, 1EA) 및 안내판 기초(콘크리트, 0.4m×0.4m×0.4m, 2EA) 4개소
점용 기간	2019년 9월30일부터 2024년 9월29일까지

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-571호

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

2019. 10. 4.

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

하천의 명칭	낙동강(국가하천)
점용자 성명 및 주소	성명 : 고령군수(도시건축과) 주소 :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
점용위치 및 면적	위치 :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42-241번지 외 31필지 일원 면적 : 2,095㎡
점용목적 및 시설개요	점용목적 : 호촌, 곽촌리 배수로 개설공사 시설개요 : 벤치플륨관(1,200×1,000) L=1,806m, 환경수로관(1,200×1,000) L=132m
점용 기간	2019년 9월30일부터 2024년 9월29일까지

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-576호

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

「하천법」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

2019. 10. 4.

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

하천의 명칭	낙동강(국가하천)
점용자 성명 및 주소	성명 : 구미시장(관광진흥과) 주소 :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(송정동)
점용위치 및 면적	위치 :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월곡리 770-4번지 일원 면적 : 9.8㎡
점용목적 및 시설개요	점용목적 : 종합관광안내도 설치 시설개요 : 종합관광안내도(4.0×3.9)
점용 기간	당초 : 2012년8월28일부터 2017년8월27일까지 **변경 : 2017년8월28일부터 2022년8월27일까지**

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-577호

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

「하천법」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

2019. 10. 4.

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

하천의 명칭	낙동강(국가하천)
점용자 성명 및 주소	성명 : 의성군 단밀면사무소장 주소 :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중동단밀로 949
점용위치 및 면적	위치 :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442번지 일원 면적 : 1.69㎡
점용목적 및 시설개요	점용목적 : 전투약사 안내판 설치 시설개요 : 안내판 1개소
점용 기간	당초 : 2012년10월30일부터 2017년10월29일까지 **변경 : 2017년10월30일부터 2022년10월29일까지**

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-580호

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

2019. 10. 4.

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

하천의 명칭	낙동강(국가하천)
점용자 성명 및 주소	성명 : 고령군수(건설과) 주소 :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
점용위치 및 면적	위치 :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4-1번지 일원 면적 : 188㎡
점용목적 및 시설개요	점용목적 : 노곡리(면도101호선) 선형개량 공사 시설개요 : 반중력식 옹벽(H=2~4m) L=71.4m, L형 측구 L=85.5m, 포장 A=200㎡
점용 기간	2019년 10월1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

새바람 행복 경북!

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